

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7. 4. 16 (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7. 4. 23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07. 4. 23(월) 제13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7. 4. 23)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자치행정과 김일래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의 개정(법률 제7846)으로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“ 50분의 1” 이상으로 함(안 제2조)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상진)

- 가. 「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」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제1항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19세 이상 연서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

나. 주요 내용은

- 연서주민의 수를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고 있음

다. 검토의견

- 검토결과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.

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4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의 개정(법률 제7846)으로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“50분의 1” 이상으로 함(안 제2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 : 실시결과(2007. 1. 12 ~ 2. 1), 의견제출 없음

라. 연서 주민수 산정이유

- 법적기준(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안)과 타지자체 입법선례를 검토한 결과, 주민의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법적 최소기준인 “50분의 1 이상” 으로 정하였음.

- 타 지자체 조례제정현황

시 · 군	연서 주민수	조례제정일
원주시	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	2006. 9. 22
강릉시	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	2006. 10. 4
속초시	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	2006. 4. 28
횡성군	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 이상	2007. 1. 2
고성군	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5분의 1 이상	2006. 1.29

- 우리군의 경우(19세 이상 주민총수 35,975명. ‘06.12.31기준)
 -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⇒ 720명 이상
 -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5분의 1 이상 ⇒ 791명 이상
 -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 이상 ⇒ 900명 이상
 -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5분의 1 이상 ⇒ 1,025명 이상

평창군조례 제 호

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서 주민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의3 (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)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"19세 이상의 주민"이라 한다)은 시·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05.1.27, 2006.1.11>

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낸도별로 산정하되, 「주민등록법」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. <개정 2006.1.11>

⑩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10조의2(연서 대상 주민 총수의 공포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.